

「군포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」  
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5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2 호

## 군포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경영시설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”을 “시설관리본부장, 개발사업본부장”으로 하고, 제3호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(안전시설팀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안 전 감 사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안 전 감 사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안 전 시 설 팀 장 이 진 영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최 병 민 ( 3 8 0 - 5 8 1 7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 ①</b>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안전보건 경영책임자”란 공사 사장, <u>경영시설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</u>을 말한다.</p> <p>3. “안전보건 전담조직”이란 공사 <u>미래기획부(안전시설팀)</u>을 말한다.</p> <p>4.5. (생 략)</p>	<p><b>제2조 (정의) ①</b>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시설관리본부장, 개발사업본부장</u>----- -----.</p> <p>3. ----- <u>안전감사부(안전시설팀)</u>----- -----.</p> <p>4.·5 (현행과같음)</p>